

증권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나석진*

I 서론	IV 증권분쟁관련 ADR제도 문제점
II. 증권분쟁관련 ADR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III 외국의 증권분쟁 ADR제도	V. 맺음말

I. 서론

증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성장·발전하였고 국가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기업의 장기안정자금 조달이라는 자본시장에 부여된 경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장운영과 더불어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회사 등 시장참가자와 시장관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증권거래법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투명한 기업공시를 통한 정보의 형평성 확보,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예방조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투자자와 증권회사 등 시장참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의 복잡성 그리고 투자자가 증권회사등에 비해 전문성 및 금융거래정보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절차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한국증권업협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물론 법률행위 주체간 다툼의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소송제도가 있다 그런데 소송제도는 공식적 분쟁해결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시간적 그리고 물질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단점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증권분쟁을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기회의 상실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에는 다른 금융거래와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반면 투자자는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조언 등 증권회사의 도움을 받아 증권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증권거래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점때문에 투자자와 증권회사간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소송제도를 통하지 않고 증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제3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대부분의 해외 선진시장의 경우도 증권분쟁의 해결을 위해 제3기관에 의한 대체소송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증권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이 증권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 본 논문은 증권관련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ADR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통한 투자자보호라는 증권분쟁조정제도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발생하는 증권분쟁 및 조정사례, 증권분쟁관련 ADR제도의 유형 및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ADR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리고 해외 선진시장의 ADR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ADR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감독기구설치법 제51조 이하, 증권거래법 제83조의2 및 제162조의2, 소비자보호법 제34조 등 참조. 한편 2004년 1월 6일 제정 및 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거래소와 협회의 분쟁조정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7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제162조의2 참조)

II. 증권분쟁관련 ADR 운영 현황

1. 증권분쟁의 유형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 등 증권분쟁조정기관의 조정사례를 분석해 보면 증권 분쟁의 대부분은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이다. 증권거래법은 일임매매나 임의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임매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일임을 받아 일임매매를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1년 이내, 일임종목수는 10종목이내 등으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로 매매거래를 일임하였으나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은 고객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회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다일임매매여부를 판단하고 증권회사의 약정제고 위주의 경영풍토를 지양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도한 일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증권관련 분쟁조정 유형별 현황²⁾

구 분	2001년(구성비)	2002년(구성비)
일임 임의매매	408(44.3)	308(40.9)
투신등 수익물	159(17.3)	111(14.8)
매매주문	45(4.9)	46(6.1)
기타	308(33.5)	288(38.2)
소계	920(100.0)	753(100.0)

(단위 건, %)

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 2003, 13~14면

소비자보호원의 증권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³⁾

구분	1999	2000	2001	2002	총계
상담건수	975	1015	378	219	2587
피해구제건수	31(10)	50(24)	30(6)	19(5)	130(45)

(단위 건, %)

- 1) 증권사의 투자신탁사 관련 상담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 2) () 증권사 관련 피해구제건수임.

2. 증권분쟁과 ADR제도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관할하는 소송제도를 통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즉 소송은 그 결과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되므로 가장 확실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제도는 결과의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며 개인별 특수사정을 반영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⁴⁾.

일반적으로 ADR제도는 사적자치에 입각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시간 및 비용부담이라는 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므로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즉 최근 금융분야에서의 분쟁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도의 이용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고 금융분야 분쟁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신속성, 간이성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쌍방의 납득이 특히 중요하므로 금융전문가의 활용이나 해결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참가 등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증권시장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들의 적

3) 김성천, 소비자보호법상 증권피해구제와 증권거래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3년 4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2003, 17면.

4) 박길준, 한국법문화에서의 금융분쟁해결제도,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31호), 2001, 442면

극적인 시장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증권회사와 투자자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새로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바라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및 시간부담에 불구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인 소송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증권거래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금융거래와는 달리 증권거래에는 투자분석 등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투자자가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로서는 증권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상의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활용,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유도를 통한 절차적 유연성의 확보가 가능한 ADR제도가 증권관련분쟁의 경우 상당히 유용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ADR제도의 유형

대체소송제도를 의미하는 ADR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인 분쟁해결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Lieberman & Henry는 ADR제도를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하였다⁶⁾. 즉 ADR제도란 분쟁당사자가 소송외의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증권분쟁과 관련한 ADR의 유형으로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는 정도, 구속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화해, 알선⁷⁾, 조정, 중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⁸⁾.

5)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p 6

6) Lieberman &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pp 425-426

(1) 화해(settlement)

화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화해에는 사법상의 화해(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다시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로 나누어진다.

사법상의 화해(재판외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킬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계약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재판상의 화해중 제소전 화해는 소송계속이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하는 것이고 소송상의 화해는 일단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상의 화해는 일단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상의 화해에는 법원이 관여하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자주적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알선 및 주선

알선 내지 주선이란 고객과 증권회사간 분쟁을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을 듣고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알선 및 주선은 분쟁당사자의 분쟁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알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조정(mediation)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은 분쟁의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분쟁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거부하면 조정절차는 불성립으로 종료된다. 광의의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 협력하는 것을 뜻하나, 협의의 조정은 국가기관에 의

7) 중재를 제외한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을 모두 조정속에 포함시키는 주장도 있지만, 본 고에서는 증권분쟁조정제도로 증권거래법상 “알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사례, 중재, 알선,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참고(<http://www.kcab.or.kr>) 하여 알선과 조정을 구분하였다

8) 박길준, 전개논문, 430면 이하

한 조정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 향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중재나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 및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립적 제3자 즉 조정인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한다는 점에서는 중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에 의한 해결은 효력이 없다는 점이 중재와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정은 결국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야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ADR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등이 증권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중재(arbitration)

중재(arbitration)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고 분쟁에 대한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다⁹⁾. 즉 분쟁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지정하고, 그 판정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개별적·강제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중재란 분쟁당사자의 다툼에 화해를 붙이되 화해를 시키기 위한 제3자의 판단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¹⁰⁾. 조정이나 화해는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거부권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중재는 일단 중재판정이 있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중재는 일단 중재인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가 무조건 그 중재판정에 복종하여야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방식이라는 점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은 아니라는 견해¹¹⁾도 있다. 그러나 중재회부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사자의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중재계약에 의한 항변을 주장할 수

9) 중재법 제1조, 제2조

10) 오세영, “중재제도 컨설팅과 중재활용”, 대한상사중재인, 「중재」, 2000 겨울, p.2

11) 김성천, 소비자보호법상 증권피해구제와 증권거래법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3년 4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9면

있고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시킬 수 있다. 중재는 간이·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분쟁해결방법이며,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분쟁해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에는 상사중재, 노동중재, 언론중재 등의 중재제도가 있으나 증권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4. ADR제도의 특징

ADR은 공식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절차상의 번잡성 및 복잡성, 과도한 비용부담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덜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알선, 조정 및 중재 등의 ADR제도는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합의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에 따라 소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알선은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합의내용에 대하여도 자율권을 주는 반면, 조정과 중재는 합의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강제력이 부여된 제도이다. 알선의 기본취지는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제3자의 도움을 통해 협상을 지속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정과 중재는 제3자에 의한 해결안에 대해 보다 권위를 부여하는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은 양당사자가 제3자의 해결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강제성이 부여되고, 중재는 제3자의 해결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해결제도이다.

둘째, 제3자의 개입여부 및 권한에 차이가 있다. 알선은 통상 제3자로서 1인이 개입하는 반면 조정과 중재는 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등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만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알선은 당사자가 만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심문과정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과 중재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고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 되며, 대부분의 조정이나 중재를 행하는 기관들은 자체적인 조정규칙이나 중재규칙을 가지고,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넷째,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여부에 차이가 있다. 알선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행해지기 때

문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5. 증권분쟁관련 ADR기관별 절차 및 효력

현행법상 증권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ADR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밖에도 소비자보호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¹²⁾ 및 한국증권업협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증권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증권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기관별 분쟁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1) 금융감독원

① 조정 범위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검사기관이다. 동법은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업무를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은 증권,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의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분쟁조정업무를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업무를 절차 및 효력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소속 부원장중 지명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

12) 현행 증권거래법은 한국증권거래소를 증권분쟁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1월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주),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관련 부분을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범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소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본논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증권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 서술한다.

격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및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③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관련 분쟁의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분쟁의 조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¹³⁾. 조정위원회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조정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에 대해서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55조). 그리고 조정절차 진행중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제3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2인은 상임위원)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5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

13)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첫째,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소를 제기한 경우, 둘째,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 권고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6조)

소비자의 피해구제청구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30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 시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며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성립된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제45조 제4항). 한편 당사자가 분쟁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제45조 제3항) 명시적 수락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증권관련단체

유가증권매매를 위한 시장의 개설·운영주체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¹⁴⁾.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83조의2 제1항)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제83조의2 제2항 및 제3항).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권거래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3조의2 제4항). 반면 증권업협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증권관련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쟁조정 경우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과는 달리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들 증권관련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적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14) 증권거래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73조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거래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업협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2조의2에서는 “ ·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협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각각이 개설·운영하는 시장별로 분쟁조정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Ⅲ. 외국의 증권분쟁 ADR 제도

1. 미국

(1) 개요

미국에서는 전미증권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이하 "NASD"라 한다)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ecurities Exchange, 이하 "NYSE"라 한다) 등 자율규제기관이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분쟁 해결이 이들 자율규제기관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이 운영하는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은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NASD가 미국내 증권분쟁관련 중재 및 조정의 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¹⁵⁾ NASD는 증권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관¹⁶⁾으로서 증권산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금전적 내지 사업적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재(Arbitration) 및 조정(Medi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NASD의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미국의 증권분쟁관련 ADR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 조정(Mediation)

조정은 조정자(Mediator)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들 상호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상을 조장하는 비전형적·비자발적인 접근방식을 말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수단과 조정제도가 구별되는 것은 분쟁당사자 스스로 해결을 받아들이고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일뿐 해결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정절차는 조정자의 스타일이나 당사자의 필요에 의존하게 되므로 case마다 다양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5) <http://www.nasd.com> 참조

16) 미국 34년 증권거래법 제3조 제26호는 전국증권거래소 및 등록증권협회 등을 자율규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34년법 제3조 26호 The term "self-regulatory organization" means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registered securities association, or registered clearing agency, or (solely for purpose of sections 19(b), 19(c), and 23(b)) the 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 established by section 15B) 한편 NASD는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재 미국내 유일한 등록증권협회이다

(3) 중재(Arbitration)

중재는 증권산업분쟁에 대해 지식이 있는 중립적 인사(Arbitrator, 중재자)에 의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말한다. 즉 중재는 중립적인 자 또는 패널(panel)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청취하고 사례를 검토한 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브로커-딜러 등 증권업자와의 분쟁의 중재는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신속하고 저렴한 수단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소송대체적 수단(alternative to the courts)으로서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제도는 중재판정(arbitration award)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에 의해 다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그것은 분쟁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NASD가 운영하는 중재제도는 중재와 관련한 증권산업컨퍼런스(Securities Industry Conference on Arbitration)와 이의가 제기된 지원조직(sponsoring organization)의 규칙에 의해 발전된 통일 중재법(Uniform code of Arbitration)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NASD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NASD는 미국 전지역에 걸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채권, 옵션, 뮤추얼펀드와 기타 다른 유형의 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분쟁 그리고 산업내 고용 및 영업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관할한다. 중재와 조정을 위해 NASD에는 7,000명 이상의 중재자와 900명이 넘는 조정자가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NASD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출한 이들 중재자와 조정자중 자신의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할 자를 선택하여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일본

(1) 개요

일본에서는 증권취인법으로 증권회사와 투자자(고객)간 분쟁(고충)의 처리를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알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알선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증권취인법 제79조의16이하). 즉 일본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와 투자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협회의 알선제도 이외에는 증권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소송

제도는 없다. 이하에서는 일본 증권취인법상의 알선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알선의 범위

즉 협회원인 증권회사가 행한 거래(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또는 유가증권지수 선물등, 유가증권옵션거래등, 외국시장 증권선물거래등 혹은 유가증권장의파생상품거래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알선을 구할 수 있다.

(3) 알선의 절차

협회는 투자자로부터 협회원이 행한 업무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상담에 응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사건을 조사하며 협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등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당해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알선위원으로 선임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을 행한다. 협회는 증권고충상담실을 설치하고 9개 지구협회에 알선위원을 두고 있다. 알선위원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 대해 참고가 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알선위원은 분쟁을 해결에 필요한 알선안을 작성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회원은 알선위원의 자료제출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증권취인법 제79조의16의2 제4항).

3. 영국

영국에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의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금융회사와 그들의 고객간의 금융분쟁 해결을 위한 ADR 기구로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라는 별도의 단일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FOS는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 조직이며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의해 만들어진(또는 승인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FOS는 FSA의 규제대상인 회사의 분쟁을 다룰 수 있으며 FSA의 규제대상인 아닌 금융회사라도 FOS의 조정대상이 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관의 경우 FOS의 조정대상이 된다 FOS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쟁조정에 대해 투자자는 FOS 결정의 수락여부

를 결정할 선택권이 인정되는 반면 금융기관의 경우는 수락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투자자가 FOS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그 결정에 구속된다.

IV. 증권분쟁관련 ADR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증권분쟁관련 ADR제도의 문제점

(1) ADR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전술한 바와 같이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제나 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 ADR제도의 존재의의가 있고 ADR제도는 예외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등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기관이 증권분쟁관련 ADR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처럼 다양한 ADR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는 환경, 언론 등 국내의 다른 분야에서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도 기관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국가내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ADR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 즉 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한 ADR은 상사중재원에서, 노동분쟁관련 ADR은 노동중재위원회, 언론관련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 등 단일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4개의 ADR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순 비교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시장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이나 일본도 증권분쟁관련 ADR기관이 전미증권업협회(NASD)나 일본증권업협회 등으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 4개의 ADR기관중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면 증권분쟁조정실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분쟁조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4개의 증권분쟁관련 ADR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결국 시장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17) 미국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인 전국증권거래소나 전국증권업협회가 증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미증권업협회인 NASD가 증권분쟁조정외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밖에 없다. 투자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관련 ADR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4개 ADR기관간에 선의의 경쟁관계가 형성 유지된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이 가지는 공공성, 전문성의 차이로 인하여 현행 ADR기관 간에는 유효한 경쟁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굳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면서까지 다수의 ADR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 금융감독원 기관정체성관련 논란

증권관련 분쟁조정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업무와 관련 금융감독기구설치법상 금융기관 검사전담기관이라는 금융감독원의 기관정체성을 고려하면 자발성·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업무의 특성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¹⁸⁾이 있다.

즉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검사전담기관이다. 즉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구설치법에 의하면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관리가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업무와 관계없는 분쟁조정업무를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자발성 차원에서 보면 부적절하고 공적규제기관은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감독에 충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금융기관 검사기관이 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업무 수행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 설립근거법률인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관련한 절차 및 효력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업무의 분쟁조정업무도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DR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하고 또 금융거래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원이 분쟁의 조정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점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분쟁의 양당사자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합의하여야 비로소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8) 김성태 송중준 이준섭 이중기, 증권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법학회-한국증권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 2001, 49-50면

(3) 조정 효력과 관련한 문제

당사자가 수락한 분쟁조정결과의 효력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 증권투자자가 법률에 정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정효력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즉 증권유관단체의 경우 조정의 효력에 대해 법률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사적화해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인 경우 법률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투자자의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더구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인 경우 당사자가 일정 기간내 조정안 수락여부에 대한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정안 수락여부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ADR제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기관도 아닌 민간기관의 분쟁조정에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그것도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ADR제도는 소송이 가지는 불편을 해소하면서 당사자간 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화해, 알선, 조정 및 중재 등 ADR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기본적인 전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화해, 알선 및 조정의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강제성이 인정되는 중재의 경우도 분쟁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참여하고 중재기관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다는 동의가 있어야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이 명시적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4) 증권관련단체 분쟁조정범위와 관련한 논란

전술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단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별 분쟁조정범위를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를, 그리고 증권업협회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분쟁조정업

무 범위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째,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증권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회원제조적이다. 회원제 조직인 이들 기관이 의사결정에 있어 회원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지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분쟁조정이 경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조정기관의 이해상충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나마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법률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업무관련 규정을 거래소 내부규정으로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의 경우는 그 업무중 하나로 분쟁조정업무를 열거하고 있을 뿐 이해상충문제의 해소를 위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기관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인정되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까지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일정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증권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 증권관련기관간 분쟁조정범위의 구분이 시장의 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으로 구분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다. 즉 단일계좌로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종목과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쟁도 시장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별 내지 계좌별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권관련단체의 분쟁조정범위는 시장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분쟁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기관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분쟁조정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⁹⁾.

2. 증권분쟁관련 ADR제도 개선방안

증권분쟁조정제도가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해결을 시도하고 이 때문에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당사자가 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

19) 2004.16 개정 증권거래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증권관련단체의 분쟁조정범위를 재편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새로 설립되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증권업협회는 “회원인 증권회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별로 조정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개선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조정범위가 불명확하여 양기관의 조정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로 조정 결과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협력을 구하기 쉽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소송에 비해 짧아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증권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떤 제도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증권분쟁 조정기관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 ADR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시장규모에서 증권분쟁조정업무를 4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소비자보호원이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의 증권분쟁조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점은 이들 기관의 분쟁조정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의 전문성, 분쟁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현재와 같이 4개의 ADR 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분쟁조정제도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의 효력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 조정절차와 그렇지 않은 조정절차가 있는가 하면 명시적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효력이 부여되는 분쟁조정절차가 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의 분쟁조정은 절차 및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법정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절차와 효력을 통일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왕에 4개 기관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일정기간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야 조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셋째,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등 증권유관단체가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담당하는 분쟁조정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관간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분쟁조정범위를 시장별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즉 거래소는 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고 협회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증권회사와 투자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생각한다. 다행히 개정증권거래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분쟁조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법 제2조 제1항을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매매체결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포함한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전자로 해석하게 되면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협회의 분쟁조정범위와 중복된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증권유관단체의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면 한 기관으로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ADR제도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고 당사자가 화해에 합의함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증권분쟁과 관련한 ADR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는 증권분쟁관련 ADR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등이 있다. ADR제도는 사회가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점점 그 유용성이 부각될 가능성 높다. 증권산업의 발전, 일반국민의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권리의식제고 등으로 인해 증권관련 분쟁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시장 사례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에 비추어 보면 증권분쟁해결을 위한 ADR기관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단체의 경우 회원제 조직 내지 주식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ADR 운영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관련단체의 ADR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성담보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ADR기관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원으로 분쟁조정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분쟁조정업무를 통합이 어렵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몇가지 제도적 보완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ADR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증권유관기관의 경우 분쟁조정범위를 거래현실과 동떨어지게 규정함으로써 기왕에 마련한 증권유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증권관련 ADR제도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 ADR기관을 단순화하고 과도하게 인정되는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석진

SROs 증권분쟁해결(securities dispute resolution) 조정(mediation)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 증권산업(securities industry)

대체소송(alternative to the courts)

<Abstract>

A Study on the Securities Disputes Mediation System

Na, Sug-Jin

Mediation is a kind of metho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securities company and investor. It is a relatively quick and efficient method to resolve disputes, and they say that it is alternative to the courts. Market play an important part in economy. To foster securities market is necessary to arrange investor protectoon system. Securities dispute mediation is process that resolutes dispute by conference between dispute parties. In these day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Korea Securities-Futures Exchange(KSFEX) and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KSDA) execute securities dispute mediation.

In the case of US, UK and Japan securities market, a single institution is in charge of the securities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in America,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NYSE, NASD etc.) take charg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about securities industry dispute. But NASD perform nealy 90% of securities disputes resolution(arbitration and mediation).

Compared to the advanced financial market, there is many institution for securities disputes resolution. And mediation sphere of KSFEX and KSDA is overlapp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 of securities dispute mediation. That is, it must be unification of dispute mediation institution or get rid of overlapping between institution. Through this operation, it promote the efficiency of securities dispute mediation and confidence to securities market.